

#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5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0년 3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3) 사무내용
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
-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
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
-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
-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
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
-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### 나. 추경개요

#### 1) 추경예산 : 541,827천원

※ 총 출연금액 : 34,881,827천원 (기정 출연금액 : 34,340,000천원 포함)

#### 2) 추경필요성

- 재단이 관리수탁하고 있는 DDP는 설립 이래, 시설 임대료,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,
- 코로나19관련 우리시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,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%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음.
- 여기에,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객 감소,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DDP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한 손실 보전액 541,827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

### 3) 출연금 편성 내용

- DDP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: 시설관리비, 시설위탁비, 안전관리사업비 지원

다 .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 개요)

1)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

(옛 동대문운동장 부지(65,232m<sup>2</sup>))

2) 규모 : 총 면적 86,574m<sup>2</sup>, 지상 4층, 지하 3층

3) 개관일시 : '14. 3. 21

4) 전경 및 위치도



5) DDP 시설 현황 : 5개 공간 18개 시설

<b>알림터</b>	알림1관, 알림2관, 국제회의장, 복합문화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, 디자인 포럼</li> <li>• 디자인·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, 패션쇼, 콘서트, 시사회, 공연 등</li> </ul>
<b>배움터</b>	디자인박물관, 디자인전시관, 디자인틀레길, 디자인놀이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·미래로 전파·전승</li> <li>• 디자인·패션 전문 전시,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</li> </ul>
<b>살림터</b>	살림1관, 크레아, 디자인샵 디자인라이브러리, 잔디사랑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·공유, 창조산업 지식·정보 제공</li> <li>•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, 시민 디자인·브랜드 체험</li> </ul>
<b>공 권</b>	갤러리문, 이간수문전시장, 동대문 역사관, 동대문운동장기념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규모 디자인·문화 전시 및 이벤트,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</li> <li>•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</li> </ul>
<b>디자인장터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남과 휴식, 방문객 편의지원</li> </ul>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

##### 1)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# 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6조(사용료의 조정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### 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(2020.3.3.-시장방침제41호)

- 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2)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경과

- 1)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시장방침 수립 : '20.3.3
- 2)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: '20.3.26
- 3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: '20.3.31
- 4)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 : '20.4.28
  -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」으로 일괄 상정, “적정”으로 심의 통과
  - 재산관리부서가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 임대료 감면 확정 및 승인

라. 감면규모 : DDP 입점업체 24개소
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임대료(A) (사용료50%)	감면관리비(B)	총액(C) (C=A+B)	비고
24개소	489,637	52,190	541,827	

※ 감면대상 업체

1)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사실 입증가능한 경우

· 소 기 업 :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,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이하

· 소상공인 : 소기업 기준 +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10명 미만, 그 외 업종 : 5명 미만)

2) “다중이용시설”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마 . 예산조치 : 2020년도 3차 추경 편성

바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류지원(☎ 2133-2705)